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053호

2026년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6년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공공연구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하고 실증하는 연구가 중요

- 실험실 수준 기술(Lab-scale)의 고도화(Scale-up) 필요성이 존재하나, 연구자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시간·비용·인프라 부담이 존재

□ 사업 목적

○ 원천기술 보유 실험실·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검증(PoC) 및 소규모 실증 집중 지원을 통해 실험실 기술의 활용·확산을 촉진

- 초기 기술검증·소규모 실증 단계부터 유사환경 실증 수준까지의 기술 스케일업을 통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제고

□ 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 국정과제 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2. 사업 내용

□ 지원 내용

○ 실험실(기술)·연구기관(실증인프라) 협력형 기술검증(PoC)·소규모 실증으로 기술의 신뢰성을 연구자 단계에서 향상(TRL 6~)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창출된 실험실 수준의 기술·개념을 검증·고도화·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실증을 지원

※ 실환경 실증(TRL 7 이상) 전에 소규모로 시작품·시제품을 제작 및 시험·개선·검증

< 지원내용 정의 및 예시 >

구분		내용
기술검증	정의	• 새로운 기술이 제품, 서비스 등으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 (PoC; Proof of Concept)
	결과물 예시	• 시제(작)품 또는 설계 도면, 시험성적서(내부 또는 공인), 논문, 특허, 연구노트(실험실 데이터 등 포함), 결과보고서 등
소규모 실증	정의	• 실환경 실증 전 유사환경에서 소규모로 시제(작)품을 개발 및 시험·검증하는 단계
	결과물 예시	• 시제(작)품 실물(사진) 및 구동 영상, 시험성적서(공인), 연구노트(운영일지 등), 소규모 실증 시설물 및 설치·운영 매뉴얼 초안 등

※ 기술검증 및 소규모 실증 결과물 예시는 실증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개략도(예시)

□ 지원 대상

○ 실험실 수준 공공연구성과의 고도화(TRL 6 이상)를 목적으로 하는 실증협력단

< 지원대상 정의 및 요건>

구분		정의 및 요건
실험실 수준의 공공연구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실험실 수준의 기술·개념 등
실증협력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법적 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 실험실 수준의 공공연구성과를 보유한 법적요건 소속기관 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필요시)	**[법적 요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자격 요건]** • 실증 역량(전문인력·인프라) 또는 사업화 의지 등 보유

실증협력단 구성 예시

(주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 ■ 실험실 수준 공공연구성과 보유
- ■ 기술고도화 추가연구
- ■ 연구실 환경 기술검증 등

(공동) 실증협력기관(연구개발기관)
- ■ 실증 역량(전문인력·인프라 등) 보유
- ■ 사업화 의지·역량 보유
- ■ 기술을 활용/적용할 제품/서비스 제시, 적용대상 시장 환경 파악 및 제시 등

※ 공동연구기관 2개 이상 참여 가능

(위탁) 실증협력기관(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만 참여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지원 기간

○ 기술·산업 분야별, 과제별 기술수준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제기간*(1년 9개월(21개월) ~ 2년 9개월(33개월))**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설계

* 과제 개시 시점: '26.04, 과제 종료 시점: '27.12~'28.12(연구자 설계)

** 연구자가 과제 수행기간을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설계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실증 및 후속 연계 계획을 평가하여 과제기간 조정(6개월 이내) 가능(연구비 증감 없음)

□ 지원 규모

○ 총 34개 과제 내외 / 연 5억원 내외(12개월/12개월 지원 기준)

* 연구자가 제안한 과제 기간 및 실증 수행 내용에 따라 과제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3. 평가 및 관리

□ 선정 평가

○ (평가목적) 지원 필요성 및 실증 계획의 적합성, 실증협력단의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평가

○ (공모방법) 자유공모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 ②서면평가 → ③발표평가 →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사전검토) 지원신청 과제별 참여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평가대상 과제 확정

- (서면평가) 과제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기관(실증협력단 등), 주관연구책임자 사업 수행 역량, 추진계획 적절성에 대해 서면평가

※ 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등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발표평가) 과제별 수행계획·목표 적합성 및 수행역량에 대한 연구책임자 발표·질의응답

< 선정평가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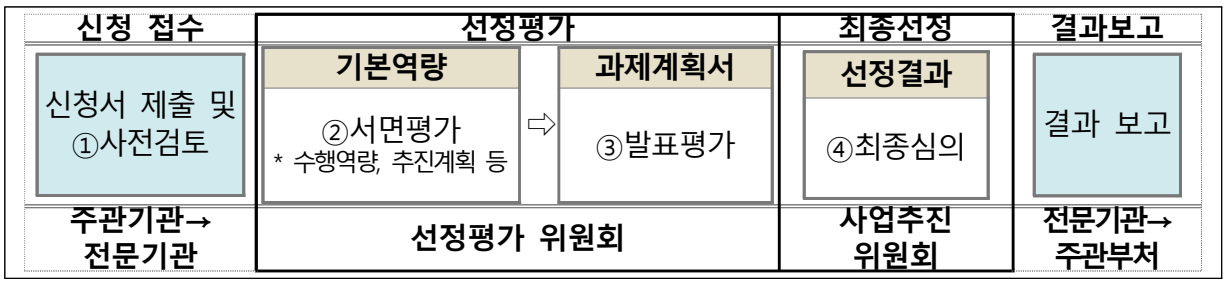

○ (최종선정) 지원대상('26년) 신규과제 총 34개 내외 선정

- (우선선발) 「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과기부 공고 제2025-1035호)」의 "과학기술 AI Agent 개발" 부문 대상 수상자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평가 생략 후 선정

※ 선정단계에서 33개 과제와 후보과제(1개)를 도출하고 수상자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못하면 후보과제를 선정과제로 지원

○ (평가지표) 실험실·유사환경 수준의 기술검증·실증 계획 구성과 연구책임자의 역량 및 후속 기술활용 연계 계획** 등을 고려

* 후속R&D 연계 계획서 또는 기술활용계획서(기술이전·창업 등) 등

-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상 기관 선정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 선정과제, 후보과제 도출

< 서면 선정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내용	결과
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실험실 기술, 소규모 실증 등) 부합성 등	발표 평가 대상 (가/부)
실증 계획의 적합성	• 실증 필요성 및 실증환경(장비·인력·인프라)의 적합성 • 실증 기간(1년 9개월·2년 9개월) 및 예산, 일정 등의 적절성 • 기술 성숙도(TRL) 향상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실증 역량 우수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증 수행 경험, PoC 또는 소규모 실증 운영 실적 • 실증협력단, 협업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 체계 구성의 적절성(역할분담, 기관별 R&R 등 포함)	
후속 연계 계획의 타당성 및 파급성	• 실증 결과 기반 후속연구·사업화 계획 등의 구체성 (실규모·실환경 실증 연계 계획, 기술이전·창업 등) • 실증 결과의 활용·확산 파급효과(자율 제시)	

※ 상기 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발표 선정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내용	배점
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실험실 기술, 소규모 실증 등) 부합성 등	15
실증 계획의 적합성	• 실증 필요성 및 실증환경(장비·인력·인프라)의 적합성 • 실증 기간 및 예산, 일정 등의 적절성 • 기술 성숙도(TRL) 향상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30
실증 역량 우수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증 수행 경험, PoC 또는 소규모 실증 운영 실적 • 실증협력단, 협업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 체계 구성의 적절성(역할분담, 기관별 R&R 등 포함)	30
후속 연계 계획의 타당성 및 파급성	• 실증 결과 기반 후속연구·사업화 계획 등의 구체성 (실규모·실환경 실증 연계 계획, 기술이전·창업 등) • 실증 결과의 활용·확산 파급효과(자율 제시)	25
(가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우수등급(S,A)을 받은 연구책임자 신청 과제	(2)
합 계		100

※ 상기 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과제 관리

○ (현장지원단) 실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지원 등을 수행하는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현장지원단은 과기정통부·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하여 과제관리 기능도 겸함

- (기능) 실증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제약, 안전·인증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전문가 지원을 제공
- (구성) 실증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실증 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현장 지원에 투입

※ 선정평가위원 중 일부 필수 참여

- (운영) 전문기관과 함께 간담회, 워크숍,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실증협력단 요청에 의한 현장 지원 제공

○ (성과 관리) 연구성과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기관(연구성과 소유기관·실증협력기관 등)이 협의하여 작성한 공동연구계약서 제출을 요청

* (예시) A대학·B출연연은 공동연구 성과를 C기업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기술이전을 포기한 사례 등 발생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제출하되,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협약체결 전에 전문기관에 제출(제출 확인 후 협약체결)
- 공동연구계약서는 기관 간 R&R 등을 참고(연구계획서 등)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다음 가이드(안)의 내용을 포함

<공동연구계약 가이드(안) - 공동연구계약서 포함사항>

1. 본 과제를 통해 창출된 추가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성과(단독 및 공동 특허 등)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성과의 이전 및 실시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기술료 등)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진도관리) 연차평가 미운영(연차보고서(20p 이하) 제출로 갈음), 과제 기간 조정(조기 종료 또는 연장(6개월 이내)) 등을 위한 특별평가 운영(요청시)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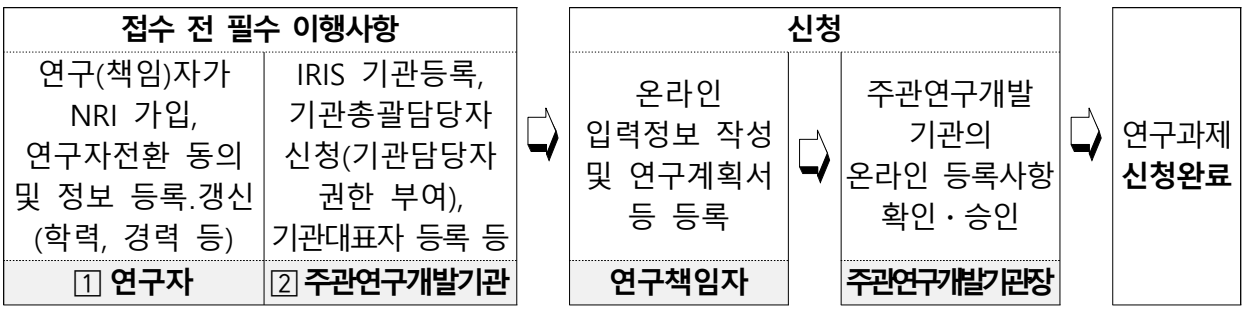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1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2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 **(첨부자료)**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첨 업로드

구분	목록
별첨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4 (필수)	기관참여확약서
별첨5	기업참여의사확인서(해당시)
별첨6	기술이전확약서(해당시)
별첨7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별첨8	공동연구계약서(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추후 안내)

5.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사업신청 기간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6. 1. 19.(월) ~ 2026. 2. 24.(화)	(37일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2. 10.(화) ~ 2026. 2. 24.(화)	16:00까지
주관기관 IRIS 담당 검토·승인기간	2026. 2. 10.(화) ~ 2026. 2. 24.(화)	16:00까지
신청절차	**연구자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문의처

구 분	내 용
IRIS 등록 및 접수 관련	IRIS 콜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사업 내용 문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과확산팀(02-736-9205)

6. 기타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연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 동 공고에 해당하는 과제는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0%가 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부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구분	정부출연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30% 이상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총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현금)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이지바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

□ 기타 사항

○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또는 경쟁률 1:1 이하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선정 평가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과제 수행 중 현장지원단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 마감일('26.2.24)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과학기술기본법」,「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해당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6. 향후일정

일정	내용
2026.2.24.(화) 16시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2026.3월 중	선정평가 실시
2026.3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6.4월(예정)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